

청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2가단11761 배당이의
원 고 ○○○
시흥시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최원기
피 고 신용보증기금
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-5(청주지점)
이사장 안택수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
변 론 종 결 2012. 8. 22.
판 결 선 고 2012. 9. 5.

주 문

1.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12197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. 4. 24.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,895,700원을 38,273,424원으로,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,501,388원을 1,123,664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 개시 및 배당요구종기

(1) 원고는 2011. 2. 17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단1054호로 ◎◎◎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○○동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아파트 ○○○동 ○○○○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청구금액 31,044,000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,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제20978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.

(2) 채권자 겸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○○○코퍼레이션(이하 '○○○코퍼레이션'이라 한다)의 2011. 7. 5.자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12197 부동산강제경매(이하 '이 사건 강제경매'라 한다) 절차에서,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1. 10. 10.로 정하여 공고하고, 그 후 감정평가서, 부동산현황 조사보고서, 부동산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, ○○○코퍼레이션 등의 배당요구서 등이 접수되었는데,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는 2011. 8. 2. 아래 나.의 (2)항과 같은 중지결정으로 중지되었다.

나. 채무자 ◎◎◎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

(1) 한편 채무자 ◎◎◎의 2011. 7. 18.자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11개회8725 개인회생절차(이하 '이 사건 개인회생절차'라 한다)에서, ◎◎◎의 금지명령 신청에 의하여, 위 법원은 2011. 7. 21. "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, 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

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·가압류 또는 가처분, ②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(단 소송행위를 제외한다)를 금지한다"는 결정(이하 '이 사건 금지결정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(2) 또한 위 개인회생법원은 2011. 8. 2.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의 중지결정을 하였다가, 2011. 10. 17. 위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후, 2011. 11. 2.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의 중지결정을 취소하였다.

다. 피고의 가압류 및 배당요구종기 연기

(1) 피고는 2009. 3. 20. ○○○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액 3천만 원, 보증기한 2012. 3. 16.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한 후 ○○○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고, ○○○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.

(2) 피고는 2011. 7. 22. 위 나.의 (1)항에 의한 이 사건 금지결정을 송달받았고, 2011. 10. 26. ○○○과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기업은행에게 30,592,2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(3) 피고는 2011. 10. 27. 청주지방법원 2011카단418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금 30,592,21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,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제148083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.

(4) 피고는 2011. 11. 8. 이 사건 강제경매의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신청을 하였고, 집행법원은 2011. 11. 9. 배당요구종기를 "2011. 12. 10."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다.

(5) 피고는 그 무렵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.

라.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이의제기

(1) 집행법원은 2012. 4. 24. 1순위, 2순위 배당에 이어 3순위(배당비율 57.21%)로 원고에게 21,895,700원, 피고에게 17,501,388원, ○○○코퍼레이션에게 18,087,40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.

(2) 원고는 채권자의 자격으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,377,724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2, 6호증, 을 제8호증의 4, 6, 10 내지 13, 을 제9호증의 2 내지 14의 각 기재, 변론전체의 취지

2. 집행법원의 배당요구 종기 연장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

가.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'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고, 「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」(재민 2004-3) 제6조 제4항은 '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(예 : 법 제87조 제3항)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(예 :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,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)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된다'고 규정하고 있는바, 배당요구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연기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.

나. 이 사건에서 보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2011. 7. 22.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이 사건 금지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당시 피고는 ○○○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○○○과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 의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,

이 사건 금지결정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가능하였던 점,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도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,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의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배당요구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처음에 결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없었다는 등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, 집행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한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이 한 부적법한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, 결국 집행법원의 부적법한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에 따라 피고가 한 위 배당요구도 적법한 배당요구종기 안에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배당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2012. 4. 24.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,895,700원을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금액인 16,377,724원을 합친 38,273,424원(= 21,895,700+16,377,724)으로,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,501,388원을 위 이의한 금액을 뺀 1,123,664원(= 17,501,388-16,377,724)으로 각 변경하여야 할 것인바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방선옥